

# 위험관리지침

리운자산운용 주식회사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여 회사 재무구조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라 함은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고유재산”이라 함은 회사의 자기자본과 그 과실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집합투자재산”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 “위험(Risk)”이라 함은 회사 또는 고객이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 또는 잠재적인 손실정도를 말한다.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위험의 측정·관리·보고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위험통제(Risk Control)”라 함은 위험 허용 수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4. “시장위험(Market Risk)”이라 함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 위험을 말한다.
5. “신용위험(Credit Risk)”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 위험을 말한다.
6.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이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 위험을 말한다.
7. “법률위험(Legal Risk)”이라 함은 관련법규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회사정관, 기타 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고객과의 분쟁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징계 등을 초래할 위험 등을 말한다.
8.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이라 함은 고객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 또는 명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을 말한다.
9.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라 함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투자증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청구가 있을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통하여 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10. “허용수준”이라 함은 해당 재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수준을 말한다.
11. “VaR(Value at Risk)”라 함은 일정한 통계조건하에서 예상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최

대손실가능금액을 말한다.

12. “장부의거래”라 함은 선물·선도·옵션·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말한다.
13. “파생상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4. “위험회피”라 함은 위험회피 대상자산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상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의 거래)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5. “예상거래”라 함은 이행의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거의 확실히 기대되는 거래로서 기존 자산·부채와 관련된 개별현금흐름(예 :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대한 미래이자지급) 등을 말한다.
16. “MMF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 함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장부가(Amortized Cost)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및 자산의 만기불일치로 인한 위험 등을 말한다.
17. “시가괴리위험”이라 함은 금리 변동시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로 손익의 과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수익자간의 손실이 이전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18. “유동성위기(Fund Run)”이라 함은 금융시장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환매가 일시에 발생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말한다.
19. “가용현금”이라 함은 보유자산의 만기, 이자 및 매각대금수령, 세금환급 등으로 당일 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순수한 현금을 말한다.
20. “유동성제약자산”이라 함은 시장매각을 통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정기에 금, RP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매각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시 이자손실이 발생하며 만기 도래시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자산을 말한다.
21. “고위험자산”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경우 Commodity, 특별자산, 부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하며, 고유재산 운용의 경우에도 이 정의를 준용하되 운용가능한 투자대상별로 별도로 구분한다.

제3조(제정 및 개정) 이 지침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4조(선관의무)

- ① 운용담당자는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고유재산의 운용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은 별개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③ 고유재산의 운용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규 및 해당 집합투자계약(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조직구성) 회사는 위험관리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또는 등기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또한 위험관리 의사결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및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이외의 조직으로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이하 “주관본부(팀)”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 ① 이사회 의 역할 및 책임
  1. 이사회는 위험에 관한 전사적 관리를 총괄하며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결원의 경우

1. 위원회는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등기이사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심의·의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부재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이 대행한다.
4. 법률 또는 회사에서 정한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5. 제4호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위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각 위원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위원은 소집권자인 위원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단,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호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⑥ 위원회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영업시간내 위원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3호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제8조(위험관리실무위원회)

- ① 회사는 위험관리 의사결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금융투자업 규정 제3-43조제1항)과

- 실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그 활동사항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CRO 또는 주관본부(팀)의 보고라인 중에 있는 임원이나 본부장 중에서 CRO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의 의장역할을 수행한다.
    2. 실무위원회는 마케팅 또는 운용부서의 수익위주 영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이 영업부서(운용 및 마케팅 등)에 치중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가급적 영업부문이 전체 구성원의 1/2가 넘지 않도록 조정)

#### 제9조(위험관리전담조직)

- ① 회사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및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위험관리전담조직(이하 “주관본부(팀)”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주관본부(팀)는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 회사가 소규모 운용사인 경우 위험관리부서와 준법감시부서는 겸직이 가능하나 위험관리부서와 감사부서 업무는 겸직이 불가하다.
- ② 회사는 주관본부(팀)가 위험관리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에 적절한 위험관리 인력(경력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주관본부(팀)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④ 주관본부(팀)가 실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신상품의 설계와 출시전 위험평가 및 사전합의권 (신상품에 대한 사전 위험 검토)
  2. 정기적인 보고기능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3. 운용부서 규정 제·개정시 합의 (위험관리 관련규정 정비)
  4. 위험한도관리 (위험 인식·측정·모니터링·관리, 시장의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5.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 (운용내역 모니터링 등)
- ⑤ 주관본부(팀)는 위험평가 및 분석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주관본부(팀)는 영업부서(운용 및 마케팅부서 등)와는 독립된 보고과정(결재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회사는 CRO 또는 주관본부(팀)의 보고라인 중에 있는 임원이나 본부장 중에서 CRO의 역할을 하는 대행하는 자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동 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험관리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⑦ 주관본부(팀)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는 법규 준수 측면에서의 위험관리 등 비재무적 위험관리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및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주관본부(팀) 임직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기회 제공,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위반에 대한 처리 및 징계 절차)

- ① 운용담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위험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된 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용담당본부(팀)장은 그 사유 및 해소일정 등을 포함한 정리안을 한도초과발생일의 익영업일까지 주관본부(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관본부(팀)장은 제1항의 통보내용을 검토한 후 그 정리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본부(팀)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이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부의할 수 있다.
  1. 해당업무의 일시정지
  2. 해당보직의 변경의뢰
  3. 인사위원회 징계의뢰
- ④ 운용담당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회사는 제재양정기준에 의거 관련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장 위험관리지침의 정비, 보고 및 위험평가

#### 제11조(위험관리지침)

- ① 회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고유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  
(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1항제2호(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산(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험관리지침의 보고 및 위험평가)

- ① 회사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 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운영위험·법률위험·평판위험의 관리

제13조(운영위험사건) 중요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운영위험의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내부사취 : 내부자가 가담한 횡령 혹은 법규 및 회사 방침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

- 생하는 손실(예 : 포지션에 대한 의도적 허위보고, 비인가된 거래형태, 직원에 의한 절도, 내부자거래 등)
2. 외부사취 : 외부인에 의한 재산의 횡령 혹은 법규위반행위(예 : 절도, 위조, 수표사기, 컴퓨터 해킹 등)
  3. 고용 및 사업장 안전 : 고용, 건강,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의 위반 또는 직원의 개인적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행위(예 : 직원의 보상요구, 조직적인 노동운동, 회사에 대한 배상요구 등)
  4. 고객, 상품 및 거래관행 : 부주의에 의한 특정 고객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 상품의 특성 및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실패(예 : 선관의무의 불이행, 고객정보의 불법이용, 상품의 결함, 모순된 약관에 의한 상품판매 등)
  5. 유형자산의 손실 : 자연 재해 및 테러 등에 의한 인적 물적자산의 손실(예 : 테러, 지진, 화재 등)
  6. 영업상 혼란과 시스템 이상 : 시스템의 고장, 정전, 통신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
  7. 집행, 전달 및 처리과정의 관리 : 거래처리의 오류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예 : 데이터입력오류, 법적서류불비, 판매분쟁 등)

#### 제13조의1(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우발적 발생한 수 있는 운영위험의 신속한 대처와 극복 및 업무 업무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 비상연락망의 구축,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 사무실 대체 장소 확보, 파업 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별첨2 참조)

#### 제14조(운영위험의 보고)

- ① 모든 직원은 운영위험과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여야 하며 운영위험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본부(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주관본부(팀)장이 운영위험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응방안을 포함한 조치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위험의 통제)

- ① 회사의 중요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각 부서는 종전 방법에 의한 업무 처리시 운영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관본부(팀)에 통보하여 그 위험요인에 대한 세부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주관본부(팀)장은 회사의 업무처리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본부(팀)장에게 관련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법적위험의 관리)

- ①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신규로 대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계약의 내용이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신규계약의 체결 또는 주요업무 처리시 관계법령, 약관 및 사규 등에 대한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 상당한 법적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평판위험의 관리)

- ① 주관본부(팀)장은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잠재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② 주관본부(팀)장은 평판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해당본부(팀)장에게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고유재산의 위험관리

### 제1절 운용의 원칙

#### 제18조(고유재산운용의 기본 원칙)

- ① 고유재산의 운용은 자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유재산의 운용에 있어 집합투자재산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③ 고유운용재산의 총위험평가액은 운용재산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9조(내부적으로 관리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및 자산부채비율)

- ① 영업용순자본비율 :
  1.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2.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50% 이상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용순자본(=순재산액(자산-부채)-차감항목+가산항목)/총위험액x100 >= 150% ]

② 자산부채비율

1. “자산부채비율”이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자산부채비율을 100%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① 고유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투자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한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안채증권 및 은행채증권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양도성 예금증서
5. 환매조건부채권
6.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예정)주식, BW, CB
7.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8. 실물자산
9.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투자대상

② 제1항의 고유재산으로 운용 가능한 투자대상별 위험의 정도는 아래와 같다.

호	운용자산	위험의 정도
7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고위험자산
8	실물자산	
9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투자대상	
1	금융기관에의 예치	일반위험자산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안채증권 및 은행채증권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양도성 예금증서	
5	환매조건부채권	
6	공모청약,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주식, BW, CB	

제21조(고위험자산의 기준과 운용 방법)

- ① 고유재산 운용에 있어서의 고위험자산은 <별첨 1>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의 정의(Commodity, 특별자산,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를 준용하여 제20조제2항과 같이 별도로 구분한다.
- ② 고위험자산을 포함한 고유재산의 운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호	운용자산	운용한도	승인	손실한도 (LOSS CUT)
1~5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자산	자기자본 범위내	대표이사	원금대비 10%
		자기자본 초과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원금대비 10%
6	공모청약,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 BW, CB	자기자본 범위내	대표이사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원금대비 25%
7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자기자본 범위내	이사회 또는 위원회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원금대비 25%
8	실물자산	자기자본 범위내	이사회 또는 위원회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원금대비 25%
9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투자대상	자기자본 범위내	이사회 또는 위원회	원금대비 25%
		자기자본 초과시		원금대비 25%

- ③ 제2항의 손실한도(LOSS CUT)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제22조(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자기자본의 20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차입 가능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으로 증액할 수 있다.

제23조(운용 제한 및 승인)

- ①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 그리고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 ②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험회피 목적에 한하며, 구조화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건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실물자산에의 투자는 건별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④ 여유자금의 운용대상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정한 적격 금융기관에 한한다.

제2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계열회사(대주주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대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주주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3. 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대주주에 대한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제25조(정보교류의 차단)

- ① 고유재산의 운용담당본부(팀)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본부(팀)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교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안채증권 및 은행채증권
  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양도성 예금증서
  5. 환매조건부채권
-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③ 고유재산운용 및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 담당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고유재산운용 및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 담당 부서간에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운용의 절차 및 방법

### 제26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

- ①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장은 제20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자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와 주관본부(팀)장의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장은 제1항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③ 고유재산운용담당본부(팀)장은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한 투자대상자산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 제2항에 의한 투자대상자산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주관본부(팀)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를 함에 있어 운용의 안정성 및 집합투자재산 등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운용내역서의 작성 및 유지)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는 고유재산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28조(현물 등의 확인 및 보관관리)

- ①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장은 고유재산 운용시 해당증서, 통장, 현물 등을 확인하고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분기 1회 제1항의 현물 등과 장부를 대조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③ 고유재산 운용시 사용하는 인감은 회사인감으로 하며, 사용시마다 인감날인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장은 제3항에 따라 회사인감이 날인된 모든 문건은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9조(보고 및 점검)

- ① 주관본부(팀)는 고유재산운용이 운용계획서 및 이 지침에 의해 운용되었는지를 월간 단위로 혹은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장은 월간 단위로 고유재산 운용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주관본부(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는 고유재산이 운용계획서와 상이하게 운용된 경우 해당사유를 주관본부(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본부(팀)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할 경우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에게 시정토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

다.

④ 주관본부(팀)장은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증대, 이해당사자의 변동,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이해상충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위험의 관리

#### 제30조(위험관리의 원칙)

- ① 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1조(분산투자의무)

- ① 고유재산 운용담당본부(팀)는 자산의 만기구조, 운용대상 및 거래처 등을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② 주관본부(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산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2조(위험의 측정과 통제)

- ① 시장위험은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로 측정한다. 가중평균잔존만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신용위험은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신용점수로 측정한다. 투자대상별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유동성자산의 비율, 동일인 투자잔액에 대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3조(장부외거래의 제한)

- ① 고유재산운용담당본부(팀)장은 회사가 장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그 거래의 기대수익 및 최대손실가능금액 추정을 위한 분석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장부외거래의 최대손실가능추정금액의 허용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주관본부(팀)는 고유재산운용담당본부(팀)로부터 장부외거래의 체결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사항) 고유재산위험관리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를 준용한다

##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 제1절 위험관리의 원칙

제35조(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 원칙)

- ① 위험관리는 사전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 ② 회사의 운용목표 및 운용전략 수립시 투자위험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③ 위험과 수익기회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위험 최소화를 우선으로 한다.

제36조(집합투자기구설정의 원칙) 회사는 지분위장목적, 자금지원목적 등 불법 또는 위법요소가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별첨과 같이 적용한다.

제38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 ①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자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증권등을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한도관리에서 제외한다. 단, 투자대상종목이 아닌 경우로서 최초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하여 편입자산 종류와 비율을 명확히 표시하여 수익자가 그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상장·등록주식)

제39조(매매결과 등의 보고)

- ① 운용부서는 매일 매매내역과 운용내역을 주관본부(팀)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자산종류별 법률적 편입한도 등의 세부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본부(팀)와 준법감시인은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투자대상별 위험통제

### 제40조(상장·등록주식)

- ① 운용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Universe에 편입된 주식을 대상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Universe일지라도 관리종목, 감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에 투자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담당임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주관본부(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주관본부(팀)장은 종목당 총 보유수량이 일정기간 일거래량 평잔에 대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운용담당본부장에게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1조(비상장주식·지분)

- ①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은 해당 집합투자기구 등의 규약 및 정관 등에서 정한 경우만 매입할 수 있다.
- ②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채무증권,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RP매수)

- ① 운용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Universe에 편입된 채무증권,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RP매수(이조 이하 제35조까지 “채무증권 등”이라 함)을 대상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② 해외채무증권 및 ABS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해외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ABS의 경우 투자 전 신용보강여부 및 풀링자산의 건전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주관본부(팀)장은 채무증권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운용담당본부(팀)장에게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안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채무증권의 매매손실보고서)

- ① 당일에 동일종목의 채무증권 등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단기매매의 경우 매도수익률과 매수수익률과의 불리한 차이 또는 금액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운용담당자는 매매손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일 오전까지 주관본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본부(팀)장은 중요한 매매손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당일에 매수하거나 매도한 채무증권 등의 매매수익률이 당일 종가수익률과의 불리한 차이가 위원회에서 정한 한도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채무증권 등의 매매, 평가수익률의 차이 모니터링)

- ① 주관본부(팀)장은 보유종목의 시장매매수익률과 평가수익률을 모니터링하여 그 차이가 불리한 방향으로 100bp 이상이거나 100억당 3억 이상일 경우 해당 운용담당본부(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② 주관본부(팀)장은 제1항에 의한 차이가 지속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운용담당본부(팀)장에게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안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Call, 은대)

- ① 은행계정대의 거래상대방은 수탁은행에 한정한다.
- ② 운용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Call Loan의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6조(Total Investment Limit) 회사는 사전에 투자대상기관 별로 채무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정기예금, RP매수, CALL의 명목원금별 또는 이들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Total Investment Limit의 시행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7조(제출, 통지, 사후보고의 간주) 이 지침에서 제출, 통지 및 사후보고의 경우 Daily Report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당해 제출, 통지, 사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3절 파생상품의 위험통제

제48조(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절차)

- ① 새로운 구조의 장외파생상품 또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최초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운용담당부서장은 장외파생상품 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ISDA(International Swap Dealers Association)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준법감시인은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주관본부(팀)장은 거래상대방 위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파생상품위험액 허용범위)

- ①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허용범위는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

산총액(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하되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계산에서 차감 또는 상계하기로 한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허용범위는 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②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위험평가액 산정 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계산에서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위험평가액 산정 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은 계산에서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요건)

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 평가시, 차감이 가능한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대상자산의 델타(용어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델타 중립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중립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또한 기초자산·만기 등이 동일하고 가격의 변화 방향만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제외한다)는 상계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②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파생상품 거래 중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효과는 매일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회피대상자산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80% ~ 125%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위험회피효과 산정에 있어 위험회피 대상이 “채권 및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과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 각각의 듀레이션 혹은 베타를 감안하도록 한다.
  2. 위험회피대상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특정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일일 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이러한 자산·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파생상품 거래 중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고 그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2.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제3자와의 외부거래이어야 한다.
- ④ 델타 중립을 통한 위험회피 파생거래는 위험회피 대상자산 포지션의 델타와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포지션 델타의 조합이 영(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절차)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운용지시서상에 위험회피대상자산, 회피대상위험의 속성 및 위험회피효과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위험회피 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 ① 위험회피 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나 처분으로 인해 과대 헤지 등의 문제가 발생되거나, 기존의 위험회피 파생거래로는 효과적인 위험회피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당 파생거래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청산하여야 한다.
- ②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축소 및 청산시에도 운용지시서장에 기록, 해당 본부(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파생거래 포지션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 목적이 상실된 부분에 한해서 그 내용을 운용지시서장에 기록하여 해당 본부(팀)장 승인을 득한 후 절차에 따라 해당거래의 성격이 재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절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제53조(기타사항)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기 위한 파생상품 운용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및 관련 법규를 참조하도록 한다.

#### 제4절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제54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 ①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칙적으로 거쳐야 한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투자구조나 투자방식에 따라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투자대상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특별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하

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관리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담보물건의 평가 및 산정)

① (담보물건의 평가 및 산정)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는 정상가격(“정상가격”이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거나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정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담보물의 정상가격에 장래의 가격변동 등을 반영한 일정률의 위험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담보물건의 평가 및 담보가액의 산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1>

##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sup>1</sup>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원금대비 20%초과인 경우</li> <li>- 해외투자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 개발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li> <li>-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li> <li>- 부동산관련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30%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원금대비 20%이하인 경우</li> <li>- 부동산 실물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3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경우</li> </ul>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li> </ul>

1) 고위험자산: Commodity, 특별자산,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별첨 2>

## 비상계획

1. 비상연락망

팀		업무	담당자
통보연락팀		비상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정)이한민 (부)조은호
응급대처팀	업무	비상시 업무연속성 유지	(정)김병국 (부)한경석
	일반	비상시 설비 대처 사무실 대체공간 확보	(정)이한수 (부)이현문

2. 정전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 계획

-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아래와 같은 재해 복구서비스 계약 체결,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하여 기준가격 산출 등의 수행 체계를 작동 할 계획

- 예기치 않은 정전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한전 변전소(용도: 국회의사당, KBS 및 당건물 공급용) 가 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자체 비상 발전기가 구축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① 재해복구 서비스 주요 계약 내용 (미래에셋펀드서비스)

- 계약내용

가. 회사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재해복구서비스의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② 재해 발생시 복구 프로세스 :

구 분	주요 조치 내용
재해 발생	-주 사무관리회사와 테스트 자료 입력, 전송
재해 선포	-회사 내외 재외 선포
재해 복구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재해복구 네트워크 설정
업무점검 및 모니터링	-재해복구시스템 상태 점검 -업무개시 선언 및 모니터링 -기준가 산출 및 업무테스트 -테스트 자료 검증 -서버용 인터페이스 데이터 생성 및 확인
복구완료보고	-복구 완료 보고

- 비상방송 스피커 1개
-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2개
- 스프링클러 (폐쇄형헤드) 15개 (72°C), 2개 (103°C)
- 분말소화기 1개
- 비상조명등 2개

### 3. 사무실 대체장소 우선순위

- ① 미래에셋펀드서비스 : 당사 사무관리업무 회사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12층(상암동, DMCC 빌딩)
- ② 한국자산평가 : 당사 전산설비 아웃소싱 회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4층(운니동, 삼환빌딩)
- ③ 건물자체 공용회의실 (10F) : 관리사무소 승인 확보
- ④ 건물자체 공용휴게실 (3F), 체력단련실 (지하 2F) : 관리사무소 승인 확보

### 4. 파업, 주요인력 이탈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 각팀의 업무를 주/부 담당 체제로 운영하며 팀장이상 비상 근무체제 돌입
-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정례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정

① 운용부문 조직도

- 대표자산운용사 : 김변국
- 자산운용본부장 : 이한민

② 운용부문에 한해 상위 운용자 궤위 시 차위운영자가 업무연속성 유지

③ 대표자산운용가와 자산운용팀장 간 주/부 담당시스템 운영

④ 운용부문은 정기적인 업무공유 회의 정례화 (최소 주 1회 이상 회의)

⑤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시설사용점검 및 대처정례화 (반기 1회)

⑥ 내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적극 추진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취득 관련 교육
- 리스크관련 교육
- 자본시장법 관련 교육